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폐기물처리 [] 사업 / [] 사업변경 계획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(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 20일)

제출인	① 성명(대표자) 또는 법인명	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	③ 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)	

사업 개요	④ 상호(명칭)	
	⑤ 업종	⑥ 사업자등록번호
	⑦ 영업대상 폐기물	
	⑧ 영업구역	
	⑨ 시설·장비 설치예정지	
	⑩ 사무실 예정지	
	⑪ 사업착수 예정일	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

⑬ 시설·장비 설치내용

시설·장비명	규격(능력)	소재지	방지시설명	규격(능력)

⑭ 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⑮ 변경사유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
[] 사업
[] 사업변경
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: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폐기물 수집·운반업: 수집·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·운반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 2. 폐기물 중간처분업,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.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 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,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다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(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3. 폐기물 중간재활용업,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.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 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,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다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(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방법

1.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.
2. ⑦란은 생활폐기물, 사업장비(非)배출시설계 폐기물,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, 건설폐기물,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, 그 폐기물의 종류는 "폐산"의 경우 "폐산(폐염산·폐황산 등)"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3.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에만 시·군·구 단위로 적습니다.
4. ⑨란은 시설·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.
5.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.
6. ⑪란은 시설·장비 설치·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.
7. ⑬란 중 시설·장비명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, 규격(능력)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,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.
8.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,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계획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제출인				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				

↓↑

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

시·도지사